곳

#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 1473 호 2024. 9. 19.(목)

#### 조 례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2호[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]······
 1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3호[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]·····
 5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4호[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]·····
 8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5호[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]·····
 10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6호[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]
 14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7호[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]·····
 16

## 공 고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-1271호[2024-2025절기 어린이, 임신부 및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공괴
 20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-1275호[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」 공청회 개최 공고]············
 25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-1287호[도시계획시설(도로 소로3-283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작성에 따른 정정 열람공고
 27

 ○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-1292호[공 고]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 28

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

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

회				
람				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미디어정보과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공 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동 (인)

2024년 9월 19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2호

####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

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 중 "전대"를 "전대(轉貸)"로 한다.

제8조 중 "절감"을 "절약"으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무상사용 기간 기산일)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제22조제4항 중 "인정하는 경우에는"을 "인정할 때에는"으로, "소요되는"을 "필요한"으로 한다.

제30조제5항 전단 중 "심히"를 "매우"로 한다.

제31조제5항제3호 중 "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17조"를 "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다.
- 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
- 2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

제32조제3항 단서 중 "감한"을 "뺀"으로 한다.

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37조제1항제5호 중 "국가보훈처장"을 "국가보훈부장관"으로 한다.

제47조 중 "건축하고자 하는"을 "건축하려는"으로 한다.

제52조제2호 중 "망실"을 "분실"로 한다.

제61조의 제목 "(변상금의 부과)"를 "(변상금의 부과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

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6조 중 "가산하여"를 "더하여"로 한다.

별표 제3호의 진료활동의 실명란 중 "장애자용"을 "장애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# 1. 개정이유

○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및 위임 사항과 개별법령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반영,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- 가. 상위법령 개정 및 위임 사항 반영
  - 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금액 및 횟수 변경(제34조제2항)
     (현행) 100~300만원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구분
     (개정)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
  - 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 및 횟수 변경(제62조)
     (현행) 100~500만원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구분
     (개정)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
  - 변상금 징수유예 기간 규정 신설 : 1년(제61조제3항)

#### 나. 개별법령에 규정된 감면율 반영(제31조제6항)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: 100분의 80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 부료 감면율: 100분의 80
- 다. 그 밖에 상위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정비
  - 상위법에 따른 조문 변경(제16조)
     (현행) 기부채납일 기준 → (개정)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
  - 차별적 용어 정비 : 장애자용 → 장애인(별표 제3호)
  - 국가보훈처장 → 국가보훈부장관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동 (인)

2024년 9월 19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3호

####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청소년"이란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  - 2. "중독"이란 인터넷 게임, 스마트폰, 도박, 담배, 주류, 마약류 및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,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청소년 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기본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
- 2.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
- 3.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 방안
- 4.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.
- 제6조(전문가 등 자문)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.
- 제7조(예방교육 및 홍보)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8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◆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# 1. 제정이유

- 최근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마약, 도박 등 다양한 중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청소년 피해도 급증하고 있음.
- ○「청소년 보호법」제5조에 따라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

- 가. 목적 및 정의(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(제3조)
- 다.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(제4조 ~ 제5조)
- 라. 전문가 자문 및 예방 교육, 홍보(제6조 ~ 제7조)
- 마. 예산 지원(제8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(제9조)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.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동 (인)

2024년 9월 19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4호

####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4조의2와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통신 두절에 대비하여 미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고, 재난관리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제3조(활동 지원)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 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 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운용
  - 2.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아마추어무선 교육·훈련

3. 그 밖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

제4조(지원신청 등)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보조금의 지원절차,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사항은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포상) 구청장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통신 지원에 뛰어난 활동을 했거나 그 밖에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「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◆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# 1. 제정이유

○ 재난재해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 으로써의 아마추어무선망의 운용, 교육·훈련, 긴급통신사업 활동 등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- 가. 목적(제1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제2조)
- 다. 재난재해 대비 교육·훈련 등 활동 지원(제3조)
- 라. 지원신청(제4조)
- 마. 포상(제5조)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동 (인)

2024년 9월 19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5호

####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도시 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"이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을 말한다.
- 2. "사후관리계획"이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.
- 3. "도시재생기반시설"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

다.

-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사후관리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·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준공 전까지 수립하여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
  - 2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 · 관리 계획
  - 3.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
  - 4.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
  - 5.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
  - 6.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
  - 7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③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「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 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.
- 제6조(사후관리 지원)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
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,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
- 2.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
- 3.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
- 4.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·운영·관리
- 5.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7조(사후관리 점검) 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, 점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.
- 제8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사업 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◆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# 1. 제정이유

○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·확산될 수 있 도록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, 지원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- 가.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 등(제1조 ~ 제4조)
- 나. 사후관리계획 수립(제5조)
- 다. 사후관리 지원(제6조)
- 라. 사후관리 점검(제7조)
- 마. 지도·감독(제8조)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동 (인)

2024년 9월 19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6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

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"2만원"을 "5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보

공

#### 1. 개정이유

○ 「울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상향 권고)에 따라 구에서 지정된 금 연구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시·구·군별 상이한 과태료 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

-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(제9조제1항)
  - (현행) 2만원 → (개정) 5만원

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보

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동 (인)

2024년 9월 19일

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7호

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

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#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독서문화진흥법」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독서 문화"란 「독서문화진흥법」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.

- 2. "독서소외인"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지역 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 문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 다.
  - 1.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
  - 2. 구민의 독서활동 육성 및 권장에 관한 사항
  - 3.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 경 개선 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)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.
  - 1.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
  - 2.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개최
  - 3. 작은도서관(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) 및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 의 독서 문화 진흥행사 개최 지원
  - 4. 연령별 ·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독서프로그램 운영
  - 5.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

- 6. 직장과 지역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
- 7.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도서, 상품권, 기념품을 배부할 수 있다.
- 제6조(독서의 달 행사 등)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.
- 제7조(포상)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「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8조(관계기관과의 협력)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, 도서관,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·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·물적 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9조(행정상·재정상의 지원)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독서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상·재정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보

공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# 1. 개정이유

○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일부개정(시행 '24. 5. 1.)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,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필 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- 가.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제2조 ~ 제3조)
- 나.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운영(제6조)
- 다.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포상(제7조)
- 라. 책 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 조항 삭제
- 마. 그 밖에 용어의 띄어쓰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
  - (현행) 독서문화 진흥 → (개정) 독서 문화 진흥

곳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- 1271호

# 2024-2025절기 어린이, 임신부 및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공고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4조, 제25조, 제26조에 의거, 2024-2025절기 어린이, 임신부 및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및 의료기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10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

#### O 사업대상 및 접종기간

구 분		접종기간	지원대상	
	- 2회 접종 대상자	`24.9.20.(금) ~ `25.4.30.(수)	생후 6개월~13세 어린이	
어린이	- 1회 접종 대상자	`24.10.2.(수) ~ `25.4.30.(수)	(2011.1.1.~2024.8.31.출생자)	
임신부	-	`24.10.2.(수) ~ `25.4.30.(수)	임신부 (임신여부 증빙서류 제시 필수)	
	- 75세 이상 어르신	`24.10.11.(금) ~ `25.4.30.(수)	1949.12.31. 이전 출생자	
어르신	- 70~74세 어르신	`24.10.15.(화) ~ `25.4.30.(수)	1950.1.1.~1954.12.31. 출생자	
	- 65~69세 어르신	`24.10.18.(금) ~ `25.4.30.(수)	1955.1.1.~1959.12.31. 출생자	
지자체	- 14~64세 중 장애인,국가유공자, 의료급여수급자	`24.10.14.(월) ~ `25.2.28.(금)	1960.1.1.~2010.12.31. 출생자 중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의료급여수급자	

\* **2회 접종 대상자**: 2024.6.30.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**총 1회만** 접종한 경우 및 **처음** 받는

생후 6개월~8세 소아의 경우 (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)

\* **1회 접종 대상자**: 2024.6.30.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횟수가 **총 2회 이상(누적)** 있는 경우 또는 **9세 이상** 

## O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

동별	의료기관명	전화번호	어르신	어린이	임신부	장애인 유공자 수급자
	365호계내과의원	295-1190	•			•
	김환곤내과의원	295-6996	•		•	
	울산엘리야병원	290-2100	•	•		•
호계동	세나요양병원	290-2000	•			
(9개소)	이순일내과의원	282-7588	•	•		
(3 "-)	청십자흉부외과의원	295-5919	•			
	한양마취통증의학과의원	293-5588	•			
	의료법인 월촌의료재단 해솔요양병원	260-5577	•			
	예스정형외과	286-5800	•			
	굿닥터연합의원	261-7553	•			
화봉동	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	287-4287	•	•	•	
(5개소)	김유홍내과의원	288-9693	•	•	•	
( ,	우리가정의학과의원	289-2075	•	•		•
	홍찬의소아과의원	281-0756	•	•	•	
	개구쟁이소아청소년과의원	294-7504	•	•	•	•
	민사랑내과의원	292-1111	•	•	•	
천곡동	새현대의원	291-3770	•	•	•	
(6개소)	연희가정의학과의원	295-0800	•	•		
	영남이비인후과의원	286-8277	•	•	•	
	정안요양병원	295-2888	•			
	다정의원	282-0127	•	•	•	
	드림아이의원	295-0129	•	•	•	
	봄소아청소년과의원	286-1311	•	•	•	
<b>매곡동</b> (7개소)	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	281-1231	•	•	•	
(/*  )	서울아산 이비인후과의원	977-1000	•	•	•	
	아이마음아동병원	761-5170	•	•	•	•
	웰당이진우내과의원	292-7179	•	•		
	복음요양병원	268-7000	•	•	•	
	열린이비인후과의원	291-2975	•	•		
신천동	울산아동병원	282-7171	•	•	•	•
(6개소)	의료법인 기쁨의료재단 엠디한방병원	286-3355	•	•		
	한빛이비인후과의원	286-7613	•	•		
	호계연합내과방사선과의원	286-7585	•			
	BB요양병원	716-1020	•			
01-1-	윤가정의학과의원	287-2300	•	•	•	
<b>양정동</b>	이기호내과의원	287-6187	•			
(5개소)	하나정형외과의원	287-9852	•			
	한소아청소년과의원	288-0075	•	•	•	•
-1c! -	김현경의원	287-0314	•	•		
연암동	의료법인 송은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	280-9000	•	•	•	
(3개소)	현대연합의원	291-9800	•	•		
송정동	몸바른의원	222-7575	•	•	•	

동별	의료기관명	전화번호	어르신	어린이	임신부	장애인 유공자 수급자
	쥬라기소아청소년과의원	251-3336	•	•	•	
/ 圧 刀  人	탑 이비인후과의원	249-7582	•	•	•	•
(5개소)	송정퍼스트이비인후과의원	297-8200	•	•	•	
	송정연세의원	289-1111	•			
머ᄎᄃ	김은정소아과의원	288-5510	•	•	•	
<b>명촌동</b> (3개소)	이내과의원	289-1066	•	•		•
(3/11-1)	행복한내과의원	283-2299	•	•		
	의료법인 옐림의료재단 농소요양병원	282-7002	•			
상안동	조윤성내과의원	293-7171	•			
(4개소)	코끼리이비인후과의원	294-8275	•	•	•	
	북울산병원	293-8888	•	•	•	
중산동	김영근의원	282-3770	•	•		
(2개소)	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	268-6575	•	•	•	
염포동	구암의원	287-7246	•	•		•
(2개소)	함께하는의원	289-7046	•	•	•	
	한결의원	268-8227	•	•	•	•
<b>산하동</b> (2개소)	강동오션키즈의원	258-1004	•	•	•	
(4/11-11)	낭만닥터마취통증의학과의원	978-5678	•			
정자동	강동의원	298-7534	•			•

- ※ 연령별 접종일정을 지키지 않을 시 무료접종이 안됩니다.
- ※ 의료기관 방문 전 <u>☎전화로 백신보유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세요.</u>
- ※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습니다.
- ※ 문의: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(☎ 052-241-8779, 8246~7)
- ※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접종 가능합니다.

## ○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

	병·의원명	전화 번호	주 소	
1	365호계내과의원	295-11 90	호계로 272	
2	울산엘리야병원	290-21 00	호계로 285	
3	이순일내과의원	282-75 88	호계2길 7, 3층	성
4	해솔요양병원	260-55 77	당수골5길 41-6	호 계 동
5	세나요양병원	290-20 00	호계로 296	
6	청십자흉부외과의원	295-59 19	호계로 202	
7	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	287-42 87	화봉로 67, 4층	
8	김유홍내과의원	288-96 93	화봉로 67, 2층	어 사사
9	우리가정의학과의원	289-20 75	화봉로 75	0
10	개구쟁이소아청소년과의원	294-75 04	달천로 9, 202호	
11	민사랑내과의원	292-11 11	아진로 102, (그린상가) 201호	
12	새현대의원	291-37 70	천곡길 169, 106동 201호	첫
13	연희가정의학과의원 295-08 천곡남로 33, (삼성코아루상가) 203~204호		천곡남로 33, (삼성코아루상가) 203~204호	천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14	영남이비인후과의원	286-82 77	가재길 87, 3층	
15	정안요양병원	295-28 88	관문길 251	
16	다정의원	282-01 27	매곡1로 15	
17	드림아이의원	295-01 29	호계매곡1로 31, (에일린의뜰) 차상가동) 105호	
18	봄소아청소년과의원	286-13 11	매곡1로 15, 3층	맥
19	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	281-12 31	매곡로 115, 202호	매곡동
20	서울아산 이비인후과의원	977-10 00	매산로 15, (참조은빌딩) 3층	
21	아이마음아동병원	716-51 70	괴정1길 114, 3, 4, 5층	
22	열린이비인후과의원	291-29 75	호계로 322, 2층	
23	울산아동병원	282-71 71	호계로 332-1, 3층	신천동
24	복음요양병원	268-70 00	제내1길 6	
25	엠디한방병원	286-33 55	호계로 332-1, 현대하이플러스 2,4층	

26	윤가정의학과의원	287-23 00	염포로 529, 303호	
27	이기호내과의원	287-61 87	염포로 601, 2층	양워
28	한소아청소년과의원	288-00 75	염포로 601, (현대자동차회관) 2층	양정왕
29	BB요양병원	716-10 20	염포로 353	
30	의료법인 송은의료재단 울산 시티병원	280-90 68	산업로 1007	연성
31	현대연합의원	291-98 00	상방로 106, 2층	연암동
32	몸바른의원	222-75 75	박상진13로 3, 3층	
33	탑 이비인후과의원	294-75 82	박상진12로 11, 지오타워 503,504호	송저오동
34	쥬라기소아청소년과의원	251-33 46	박상진12로 11, 지오타워 403~405호	0
35	이내과의원	289-10 66	명촌로 85, (평창리비에르2차상가) 203호	명아
36	김은정소아과의원	288-55 10	명촌15길 10(평창리비에르3차상가) 201호	명초나동
37	농소요양병원	282-70 02	아진로 78	h
38	코끼리이비인후과의원	294-82 75	아진로76, (맑은샘빌딩) 201호	상안동
39	북울산병원			
40	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	268-65 75	중산동로25, 401호	중
41	김영근의원	282-37 70	이화5길 10	중산동
42	구암의원	287-72 46	염포로 633	염
43	함께하는의원	289-70 46	염포로 673	염포동
44	강동오션키즈의원	258-10 04	산하중앙2로 150, 4층	산
45	한결의원	268-82 27	산하중앙2로 290, (아이스케어) 305~306호	산 하 동
46	강동의원	298-75 34	동해안로 1441	정 자 동

- ※ 의료기관 방문 전 <u>☎전화로 백신보유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세요.</u>
- ※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습니다.
- ※ 문의: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(☎ 052-241-8779, 8246~7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- 1275호

# 「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」공청회 개최 공고

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에 대하여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0조, 「같은 법시행령」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13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개최 목적

-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
- 2. 일 시 : 2024. 9. 30.(월) 14시
- 3. 장 소 : 강동동 강동문화센터 4층 시청각실(북구 산하중앙3로 51)

#### 4. 내 용

- 강동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경과
-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세부사업내용 및 향후계획
- ㅇ 주택정비(자율주택정비사업) 사업 안내
- ㅇ 지역주민 의견청취

#### 5. 기타 사항

-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실 주민께서는 공청회에 참석하시 거나 공청회 개최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방문(본관 2층), 이메일 (bjms2023@korea.kr) 및 팩스(052-241-7909)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 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(☎052-241-8621~5)로 연락 주시 기 바랍니다.

# <u>의 견 서</u>

사 업 명 칭	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		
	성 명 :	[연락처 :	)
의견 제출인	주 소 :		
	의 견 (	H 용	

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27조에 의하여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4. 9. .

의견 제출자 : [서명 또는 인]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- 1287호

#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로3-283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작성에 따른 정정 열람공고

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283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을 작성하고,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,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9월 19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로3-283호선)사업

나. 명 칭 : 이화정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

2. 위 치 :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30-5번지 일원

3. 사업규모 : (당초) L=186.0m, B=6.0m, A=1,591.8 m²

(변경) L=186.0m, B=6.0m, A=1,585.6m²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

- 5. 사업기간 : 2022. 3. 17. ~ 2024. 12. 31.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붙임 명세서와 같음
- 7. 열람기간 :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- 8. 열람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
- 9.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,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(☎052-241-862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- 1292호

## 공 고

「도로법 시행령」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19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명	(주)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송재호					
주소	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-10					
점용 위치	○ 송정동 1155-2	노선명	○ 중1-327			
점용 목적	○ 도시가스 매설공사	점 <del>용</del> 면적	○ L = 3m ○ A(일시) = 5.4m² ○ A(계속) = 0.33m²			
점용 기간	○ 당초 : 2024. 7. 19.(착공일) ~ 2024. 9. 16.(착공일로부터 60일간), 계속점용 준공일로부터 10년 ○ 변경 : 2024. 7. 19.(착공일) ~ 2024. 10. 16.(착공일로부터 90일간), 계속점용 준공일로부터 10년					